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9.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2209014)	2025. 3. 17.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5.07.0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8.26.) 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2214486)	2025. 11. 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6.02.0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8.26.) 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2216561)	2026. 2. 4.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8.26.) 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윤건영의원 (2219228)	2025. 6. 12.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6.08.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일부개정법률안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8.26.) 상정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과 정보체계의 노후화·연계 미비 등으로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및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대부료 면제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라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유재산 총조사 및 관리 분석·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한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나. 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4).

다.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동의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6조, 제24조 및 제34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마.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3).

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의 위임 및 일반재산의 양여 등에 관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함(안 제10조의2, 제14조, 제40조 및 제98조).

법률 제 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공유재산 관리 등의 분석·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 및 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따라”를 “따른”으로,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를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따라 무상으로”를 “따른”으로,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를 “간 재산의 무상 이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를 “이 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경우”를 “사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을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제34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제1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공유재산 총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공유재산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공유재산 총조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4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총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8조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18조의4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3(공유재산 관리 등의 분석·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 및 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생 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	③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1. ----------따른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삭 제>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4. ----------따른------간 재산의 무상 이관에 관한 사항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이 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따른----------대부료 면제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6. ----------사항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4(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제40조(양여) ① ----------.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	1. ----------통합특별시·광역시----------

요한 경우 2. ~ 5.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공유재산 총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공유재산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공유재산 총조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4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총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2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8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98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